

심의결과 위안대로가결

의안 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안자
13	제 7차	84.3.15	중계 최창익

의안 제7차에 대한 의결사항은
일부 개정

의결사항 1. 위안대로에 대한 의결사항
이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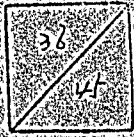
2. 실시일자 1984. 3. 23

제안관계
업무조항 위안대로 제 7조

제안취지 위안대로의 기타어음 등 증권 발행에
있어 제정됨에 따라 등 제정체계에 맞추어
위안대로의 증권거래에 대한 의결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본건 선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22 22



청구사항 4. 제의관계 범주조항

한국은행법 제 72조

의금통화은행위원회는 제 67조에 규정된

여신채무에 관한 이월을 정한다

(이해 상 약)

2. 청구물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 담보대출

최급거점 (한)

64 2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일부개정령(안)

현행		개정 (안)		비고
(삭제)				
	구분	이율		이율
1. 대출인 2. 담보대출	상업어음	연 5.0%	1. 상업어음 개발인	연 5.0%
	↑출어음, 외화포지	연 5.0%	2. 담보대출	
	공판어음		가. 수출어음 담보대출	
	공수물수출준비어음		나. 외화·시 공판어음 담보대출	
	농업수산업회원사	연 5.0%	다. 농·수산물수출준비어음 담보대출	
	업어음(농협 및		라. 농업, 수산업 회원사업어음	연 5.0%
	수협회계부)		담보대출(농협 및 수협회계부)	
군수산업어음	연 5.0%	미. 군수산업어음 담보대출		
기타어음등 증권	전반월금융기관「물」거래평균금리 (소속집회하 통제자리부터는 대어 비율)에 1%「포인트」가산한 이율 다만, 금융통화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상자대상은 별도의 이율을 적용한다.	바. 기타어음등 증권 담보대출		
		「한국은행의 기타어음등 증권(보통 채권채증) 제 고도, 1항에 의하 채출증		

현	개	정 (원)	비
가. 가다어음등 증권 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이율 적용대상 차 연 6.0% 적용대상 (1) 1981년도 수출산업설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2) 1981년도 중소기업 특별저리설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3) 「에너지」 절약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4)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 (5) 정부의 정책사업 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여신지원을 위한 대출 (6)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히 인정할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	(1) 제1호에 의한 대출 (2) 제2호에 의한 대출 (3) 제3호에 의한 대출 (4) 제4호에 의한 대출	연 6.0% 연 5.0% 연 8.0% 전방월 금융기관 「콜」 거래평균금리에 1% 「포인트」 차산한 이율 (소수점 둘째자리부터는 대어 버림) 연 5.0%	특별이율 적용대상 연 6.0% 적용대상 연 5.0% 연 8.0%
나. 연 5.0% 적용대상 기업체질 강화대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도차 개발채권 보유 지원을 위한 대출 25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이자 이율: 연 5.0%	3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이자 2-3	제)	